##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10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및 금융이용자	0001010	키기세시이이	000470		제418회 국회(정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	2201319	한정애의원	2024.7.3.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네티어 드이 드르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회 권무이의회(20240.25)	
대부업 등의 등록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및 금융이용자	2201391	서영교의원	2024.7.4.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보호에 관한 법률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일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조정식의원			제418회 국회(정기회)	
대부업 등의 등록				상정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및 금융이용자	0001514		000470		제418회 국회(정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	2201514		2024.7.9.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일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대부업 등의 등록				0.0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및 금융이용자	2201517	민병덕의원	2024.7.9.		제418회 국회(정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	2201317	1209기전	2024.1.3.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엄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무개정법률안 2002.12 2.02.25 김태선의원 2002.47.25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1  전존호의원  20247.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본개제점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본계계점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료 제계(대본)원회(2024(11.25) 제가 법안심사제(도위원회(2024(11.25) 제가 법안심사제(도위원회(2024(12.2) 제가 법안심사제(도위원회(2024(12.2) 제가 법안심사제(도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상정	
모호에 판단 념혈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본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본 관한보자 제법원의 목행(2024112.5) 제법원의 목행(202412.2) 제공화 법안심사제(소위원회(2024112.5) 제공화 법안심사제(소위원회(202411.25.) 제공화 법안심사제(소위원회(202411.2	및 금융이용자	9909179	O 즈버 Al Al	2024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81 천준호의원 2002412 20124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381 천준호의원 2002439	보호에 관한 법률	2202172	판단장의전	2024. <b>1.</b> 24.	소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본상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21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52	대부업 등의 등록				상정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변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조조의원 2002381 전조호의원 20024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성준의원 200241.20 전조조의원 200241.20 전조조관 20024 전조조의원 20024 전조조관 20	및 금융이용자	2202252	기태서이의	2024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2821 보충은 의원 2024.12 202821 보충은 의원 2024.13 전문호의원 2024.14	보호에 관한 법률			2027.1.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81 전준호의원 2024.7.30						
제1차 영무위원회(2024.1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소위원회(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소위원회(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소위원회(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전한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전화 범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전화 범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조익원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18회 국회(정기회원 (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원	222				삿것	, , , , , , , , , , , , , , , , , , , ,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건 202821					0 0	
보호에 관한 법률인 보기정법률안 보상준의원 20024.11		2202381	천준호의원	202473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본생사제보주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전체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전체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전체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전체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		2202001		2021.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임본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임본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발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대부업 등의 등록 일부개정법률안 2202821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93  천준호의원  전건4.816  전문호의원  전건4.817  전문호의원  전건4.816  전문호의원  전건4.816  전문호의원  전건4.816  전문호의원  전건4.817  전문한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2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2위원회(2024.12.2.)	대부업 등의 등록		박성준의원	2024.8.14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보기 점험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본교업상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220282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급하는 기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33  1203248.27  1203233  1203248.27  1203233  1203248.27  1203233  1203248.27  1203248.27  1203233  1203248.27  1						
대우엽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2893 천준호의원 2024.816. 조위원회 국회(정기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100 박상혁의원 2024.822. 조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233 최형두의원 2024.827. 조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233 최형두의원 2024.827. 조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조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조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조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 10000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893   천준호의원   20024.8.16.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2위원회(20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2위원회(20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2위원회(20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2위원회(20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2위원회(20024.11.25.)	대부업 등의 등록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3100	및 금융이용자	222222	システムの	0004016	ൂ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00 박상혁의원 2024.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3233 최형두의원 2024.827.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3233 지행두의원 2034.827.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3233 지행두의원 2034.827.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3233 지행두의원 2034.827.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324.7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3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3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3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3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303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30324.11.25.)	보호에 관한 법률	2202893	선군오의원	2024.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00 박상혁의원 2024.8.22.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대우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233 최형두의원 2024.8.27.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233 최형두의원 2024.8.27.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전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전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전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지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이용자	2202100	바사혀이의	2024.8.22	소의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분기 전법률이 관한 법률 의	보호에 관한 법률	2203100	70771	2024.0.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233 최형두의원 2024.827.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보호에 관한 법률 이보기정법률이 전환 법률이 기본기정법률이 전환성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일부개정법률안				םיין	
대우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2024.827. 설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세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200					1 1 2 2 1 1 2 1 7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2024.8.27.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전태호의원 2024.9.5.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 ' ' ' ' ' ' ' ' ' ' ' ' ' ' ' ' ' '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 이보고 전변률이		2203233	최형두의워	2024827	소위	7 == 7 7 7 7 7 7
일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보고 전 번록이 전 보통이 전 보통이 전 보호의 관한 법률		2200200	10112	2021012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보고 전비록이 2003677 정태호의원 2014.9.5. 설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4.11.25.)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4.12.2.)	일부개정법률안				Ц	1 1 2 2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내무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분기정법률이	1) H A) E A) E B					
및 급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보고 전변론이 2003677 정태호의원 20024.9.5.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1.25.)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4.12.2.)						
보호에 관한 법률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2203677	정태호의원	2024.9.5.	소위	
이므게저버트아						
	일무개정법듈안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및 금융이용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	2204042	김선교의원	2024.9.13.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일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25.)	
및 금융이용자			2024.9.23.		제418회 국회(정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	2204194	강민국의원		2024.9.23.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현무개강업환인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대부업 등의 등록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11.22.)	
및 금융이용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	2205219	김현정의원	2024.11.4.	소위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2.)	
2丁/11/8 百世인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 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 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제8호 등).
-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 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 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 제3조의5).

-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안 제11조).
-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의 대부"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로,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을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 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부중개를"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본문 중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정사업장"을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을 "대부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2항"으로 한다.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 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 2.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는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

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 ·제공·유통하는 행위

-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 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 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 으로 체결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 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 제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 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나.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제9조의4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한다)"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제9조의6의 제목 중 "대부광고"를 "대부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을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

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으로, "광고에 사용된"을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으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부터제4항까지"로, "이의신청"을 "전화번호의 확인·신고, 이의신청"으로한다.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 할 수 있다.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 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 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다.
  -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제목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대부중개를 하여서는"을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 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조의5 제1항제3호"를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3조의5제2항제1호·제2호"로, "충족하지"를 "유지하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미등록대부업자"

- 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3.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 ·유통한 자
  -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과정에 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 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별표 1 제2호의2 중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대표자, 임원 또 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조(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 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부업"이란 <u>금전의 대부</u>	1 <u>이익을 얻을 목적</u>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	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
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로 금전을 대부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u>이</u>	
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	
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	<u>이하 "대부"라 한다)</u>
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	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u>.</u>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대부중개업"이란 <u>대부중개</u>	2 <u>이익을</u>
<u>를</u>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3. ~ 6.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3조(등록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 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5. (생 략)

반복적으로	로 금전의	대	부를	실
<u> 질적으로</u>	알선하거	나	중기	하
<u>는 것을</u>				

- 3. ~ 6. (현행과 같음)
-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 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 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2)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략)

③ ~ ⑧ (생 략)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u>다</u> ----. <u><단서 삭제></u> 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2. (생략)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 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 개업을 하려는 자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 다.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2. (현행과 같음)

-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고정사업장</u>을 갖 출 것
- 4. (생략)
-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할 것

가. • 나. (생 략)

다. 최근 <u>1년</u>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생 략)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u>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금액</u>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u>다만, 대</u>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u>고정사업장, 인</u>
<u>력과 전산설비 등</u>
4. (현행과 같음)
5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3년</u>
라. (현행과 같음)
②
갖추어야 하며 등록
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u>
<u>&lt;단서 삭제&gt;</u>

<신 설>

<신 설>

<신 설>

3. ~ 7. (생략)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시·도지사에 등록된 대</u> -<u>부업자등</u>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6. (생 략)
-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u>1년</u>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
<u>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금액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
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3. ~ 7. (현행과 같음)
l조(임원 등의 자격) ①
<u>대부업자등</u>
·

•	
6. (현행과 7	
 <u>3년</u>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 다)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7. (현행과 같음)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런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 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 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 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 <삭 제>

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 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 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 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 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 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 괄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허가 · 인가 · 등록 등이 취소 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 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 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 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 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 | <삭 제> 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 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 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 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 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삭 제>

3	 	 	 	 	 	 	_	 	_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생 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현 략)

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u>설></u>

<신 설>

제2항-----

행과 같음)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 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 2.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 ·대여·유통하는 행위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 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 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 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 공자"라 한다)는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 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 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 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 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 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 는 행위
-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
  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 우
-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
  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
  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
  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
  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 지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 에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 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등록 등 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 인될 수 있는 표현
    - 나.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 채권양수 · 추심 금지 등)
- ① -----불법사금융업자

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 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 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증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증개업을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 략)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 지 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신설>

### ② (생 략)

제9조의6(불법 <u>대부광고</u>에 사용 제9조의 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용된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 ① ·

② <u>불법사금융중개</u>
<u>업자</u>
③ (현행과 같음) 세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1. • 2. (현행과 같음)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
<u>임된 자</u>
② (형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9조의6(불법 <u>대부행위 등</u> 에 사

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u>광고를 발</u> <u>견한 때에는</u>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해당 <u>광고에 사용</u> 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
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
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u>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u>에는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u>⑤</u>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화번호의 확인 · 신고, 이의신
<u>청</u>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

 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

 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후단 신설>

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 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 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 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 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 에 대해서는 「상법」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 제1 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 에게 <u>대부중개를 하여서는</u> 아 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 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 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서는 아니 된다.
  - ③ ~ ⑥ (생 략) <신 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 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

데11소의2(숭개의 제한 능) (1)
<u>불법사금융업자</u> -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
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u>,</u>
②
불법사금융중개업자
<u>.</u>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

- 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 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 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 며, 구체적인 기준 ·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 상책임) ① 대부업자등(불법사 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 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 <u>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u>

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략) <신 설>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상</u>	대부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
한1	<u> </u>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 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 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 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 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조사 · 분석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 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생략)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u>충족하지</u> 아니한 경우<단서 신설>

<u>.</u>
1
제7조, 제8조, 제8조
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2.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2.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3조의5제2항제1호·제 2호의-------유지하지-----------. 다만, 일시적으로 요 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2의2. ~ 8.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u>별표 1 각</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⑦ · ⑧ (생 략)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신 설>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
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의2.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u>제1항제1호</u> -
<u>.</u>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u>10년</u>
<u>5억원</u>
1.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u><삭 제></u>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

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 2. 제9조의3제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3.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 2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 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 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 증을 대여한 자
- 2. (생략)
-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를 받은 자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미등록대부업자</u>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u>미등록대부중 개업자</u>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5. ~ 10. (생략)
- ③ (생 략)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u>자</u>
<u>4</u>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5. ~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